

202.27호

행 정 명 령

**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 
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**

2020년 3월 7일에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재해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제202호 행정명령(Executive Order Number 202)을 발령했기 때문에,

뉴욕주에서 COVID-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,

따라서 이제 Andrew M. Cuomo 뉴욕주 주지사 본인은 행정부법(Executive Law) 2-B조의 제29-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, 이번 행정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6월 4일 목요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재난 비상 상황 중 재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지시를 발행합니다.

- 다른 주 또는 캐나다의 유효한 면허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은 현재 뉴욕주 면허 또는 등록을 가지지 않은 상태의 전문가의 활동을 승인하기 위한 행정 명령 202호에 의해 중단된 모든 법률의 중단 및 개정 또는 이후 선포된 행정 명령의 개정 및 변경은 이에 전문가들이 뉴욕주의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30일 동안 연장됩니다.

2020년 5월 5일 올버니 시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 및 주 인장의 권한에 의해 이를 선포합니다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